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술보호 행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불공정거래 조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특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소속을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하며, 특구혁신기획단에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미디어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20일까지에서 2025년 1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기계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9급 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5.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혁신담당관, 재정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재정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산하기관의 정책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6.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조정 및 지원

9.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11.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12.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4.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재정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용계획의 수립·조정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8.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제4조제6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객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재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 내 직원 및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를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로,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을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를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1의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3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51호”를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 제32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71호부터 제7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57호부

터 제75호”를 “제12조제3항제88호부터 제1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7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8항, 제22항, 제12항, 제13항, 제20항 및 제 2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70호까지 및 제7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과, 기업환경정책과, 정책분석평가과, 국제통상협력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인력정책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디지털혁신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입지환경개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8항(중전의 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는 제14호로 한다.

4.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 중소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및 메시지 관리

6.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 대응

7.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

12.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13.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관리·감독

제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통계분석과장”을 “기업환경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4.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 및 감독
5.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7.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10.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11.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업계동향 파악 및 공동 대응 등 협력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와의 정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수립
14. 민간·현장 전문가로부터의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17.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승계 지원

18.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19. 대내외 경제위기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제9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평가과장”을 “정책분석평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제4호, 제8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 정책 및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4.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6.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 조정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6.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7.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9.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0.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11. 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전산화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회의 운영
 13. 중소기업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제9조제22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도약정정책과장”을 “기업구조개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21.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

제9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국제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협력
 3. 외국 정부·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시행
 5.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6.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8.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9.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10. 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12.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12항(중전의 제13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의 “지식 서비스”를 “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항(중전의 제1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⑭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고용 및 인력수급에 관한 동향분석,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고용·노동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노사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복지 제도 개선 및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업종분야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중소기업 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15.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력수급 효율화 및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의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파견·채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 및 영마이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관련 학과 및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26. 중소기업 인력 활용·공급 동향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2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지원,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9.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32.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분야별 활용·공급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 공공구매 실적관리 총괄
- 제9조제15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제

19호 및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기술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과장”을 “기술혁신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를 “기술연구회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운용
3.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4. 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운영
5. 중소기업 관련 기술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선진기술의 동향조사 및 소개
7.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8.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9.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2. 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14.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술 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15.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16.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17.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분석 및 육성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21.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20항(중전의 제17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9. 중장기 지역산업·기업발전계획 및 지역별 산업·기업진흥계획의 수립·평가 및 추진
20.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2. 지역 연고·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전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23.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4. 지역·기업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25.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운용
26.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기업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7.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8.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 관련 법령 제도의 연구 개선
30.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1.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32.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4.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간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5.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6. 지역산업 및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
 37.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8.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⑪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혁신방안의 수립·시행
 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분석·유통·활용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디지털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12.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의 기반 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
13. 중소기업 통합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기업육성과장”을 “기술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2.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체제의 구축 및 운영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5.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원방안 수립
9.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0.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1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16.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17.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정보구축·제공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20. 지역협동형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제9조제18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제2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혁신지원과장”을 “제조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9항 및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및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지역 확산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8.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령검토 및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공정혁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6.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⑰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유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행정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기술 보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 행정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보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⑱ 입지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입지, 공간 및 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3.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5. 해외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7. 중소기업 협업, 협동화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에 관한 사
항
 8.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해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2.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지역중소기업 관련 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
템에 관한 사항
 13.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14.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7.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외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2항 중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

으로 하며,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을 “창
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창업진흥정책관”을 “창업정책관”으로, “제7호까
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혁신정책관”을 “벤처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
책과,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및 미래산업전략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정책총괄과장”을 “창업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9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3. 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5. 재창업에 필요한 교육, 자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26.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운영
27.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
선에 관한 사항

28.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9.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8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

12.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8호로 한다.

11.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4.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6.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7.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촉진과장”을 “창업생태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8. 창업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9.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제품 제작 등 제조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5.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총괄

16. 창업 생태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와 설립·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 퇴직자 및 중장년층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2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정책 수립 및 이행

17.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보증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바우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제10조제12항(중전의 제1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 “투자관리 전문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의”를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의”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 “중소·벤처기업”을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 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예산 운용 및 관리·운영

14. 지역의 균형적 벤처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글로벌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2. 국내외 벤처투자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17.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3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수관리과장”을 “투자관리감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신고·관리”를 “등록·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외국투자기관협의회 운영지원 및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삭제한다.

⑭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2.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5.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대응 및 동향분석

6. 그 밖에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중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21호까지,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을 “제6호까지, 제6의3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육성과,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거래환경개선과”를 “디지털소상공인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영역조정과, 불공정거래개선과 및 소상공인 제도약과”로 한다.

제11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육성 정책”을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14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활동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의2, 제26호의3 및 제27호를 각각 제3호, 제10호 및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 지역별 소상공인 육성기관 구성·운영 지원

제11조제6항제3호(중전의 제26호의2)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소상공인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을 “디지털소상공인과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상공인성장축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창업, 성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3. 기업가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 기업가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공유 지원
5. 기업가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
6.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및 홍보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
8. 업종별 소상공인 육성 지원
9.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10.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1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3.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4.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출원, 보호, 활용 지원
16.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7.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9.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
20.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성장, 협업 활성화

2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 창출
22. 소상공인 대상 투자제도, 투융자 연계 제도 기획 및 운영
23. 소상공인 창업혁신거점 구축·운영

제11조제9항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시장육성과장”을 “전통시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생협력지원과장”을 “사업영역조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환경개선과장”을 “불공정거래개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상권기획자 제도 기획 및 운영
33. 상권기획자 지정, 육성, 협력 증진
34. 상권발전기금 제도 기획 및 운영
35. 상권발전기금 조성, 운용 지원

⑭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운영
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
4.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
5. 폐업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6.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7.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 재기 지원사업

8. 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소상공인 각종 비용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각 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협력과”를 “지역정책과”로, “조정협력과장”을 “지역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9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역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사전 협의
20. 산업기술단지 사업수행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21. 산업기술단지 사업수행자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 중 “제25호부터 제30호”를 “제28호부터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37호를 각각 제1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4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중전의 제37호) 중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을 “창업정책관, 벤처정책관”으로 한다.

2. 창업기획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3. 벤처투자 순회 상담회 계획 수립 및 운영

16.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 및 변경

제17조제3항 중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거래환경개선과장”을

“정보화담당관, 특구운영과장, 불공정거래개선과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을 “특구혁신기획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특구총괄과 및 지역특구과”를 “특구혁신기획단에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및 특구지원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구총괄과장”을 “특구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8호) 중 “규제자유특구”를 “특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중전의 제12호) 중 “규제자유특구”를 “특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
8.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0.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

12.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운영

9. 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1.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감독

13.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1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감독

18. 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특구과장”을 “특구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21호 및 제2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중전의 제10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의”를 “특구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지정해

제

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5.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6. 규제자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7. 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2.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8.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2.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인·변경 및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정·지정해제
14.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15.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16.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검토 및 관

계부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7.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8. 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19.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구성·운영
 20.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지정해제
- ⑤ 특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4.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5.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6. 글로벌혁신특구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글로벌혁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9.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10. 글로벌혁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1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13. 특구 관련 자료의 조사, 성과관리 및 통계 구축

14. 특구 간 협의체 운영

15. 특구 관련 연계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특구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83”을 “488”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81”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68”을 “172”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40”을 “14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9”를 “27”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476”을 “481”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9”를 “183”으로 하며,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2”를 “135”로 하고, 행정

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6”을 “2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8”을 각각 “404”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5”를 “23”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8”을 각각 “404”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5”를 “23”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76”을 “475”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27”로 하며,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9”를 “28”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476”을 “475”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27”로 하며,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9”를 “28”로 한다.

별표 7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19”를 각각 “21”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을 “2”로 하며, 2. 소상공인코로

나19회복지원단장(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및 3. 소상공인손실보상
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총계 및 일반
직 계 “7”을 각각 “8”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
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을 “4”로 한다.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3.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별표 9 중 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월 20일”을 “2025년 1월 20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기업
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중소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
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
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7]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중소기업정책실 디지털혁신과	6명 (5급 4명, 6급 2명)	2024년 9월 30일까지
2) 중소기업정책실 제조혁신과	1명 (4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혁신담당관, 재정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재정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혁신담당관-----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6. 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	6.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용계획의 수립·조정	
7.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7. 부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평가의 총괄·조정 및 지원
9.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9.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10.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0. 산하기관의 정책평가----- -----
<신설>	11.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관리 업무의 총괄
<신설>	12.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신설>	13.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신설>	14.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신설>	1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11. (생략)	16. (현행 제11호와 같음)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재정행정담당관-----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	<삭제>

<u>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u> 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 다)의 운영 등 행정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신 설> <신 설> <신 설> 4. ~ 6. (생 략) 7.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조정 및 지원 9. (생 략)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11. (생 략)	<삭 제> <삭 제> 4. 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용계획의 수립·조정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 3.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8.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산하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13.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14.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6. ~ 19. 삭 제 2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⑧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생 략) <신 설> 2. ~ 18.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⑦ ----- -----. 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정보화담당관-----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 18. (현행과 같음)
--	--	---	---

⑨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8. (생략)

<신설>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

⑨ 비상재난담당관-----

---.

1. ~ 8. (현행과 같음)

9. 부 내 직원 및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
--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
-----.

③ -----
-----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1의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31호-----
-----.

④ -----

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⑤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57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 제32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71호부터 제76호-----
-----.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70호까지 및 제7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 제12조제3항제88호부터 제114호-----
-----.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과, 기업환경정책과, 정책분석평가과, 국제통상협력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인력정책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디지털혁신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입지환경개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

⑥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과, <u>일자리정책과</u>, 정책통계분석과, <u>정책평가과</u>, <u>제도약정정책과</u>, <u>미래산업전략팀</u>, <u>글로벌성장정책과</u>, <u>기업금융과</u>, <u>판로정책과</u>, <u>국제협력과</u>, <u>지역혁신정책과</u>, <u>지역기업육성과</u> 및 <u>제조혁신지원과</u>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4. ~ 7. (생략) <신설>	<u>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삭제> ⑧ ----- -----. 1. ~ 2. (현행과 같음) 3. <u>연도별</u>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8. ~ 11.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4. <u>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시행</u>	<신설> <신설> <신설> 8. <u>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u> 9. <u>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시행</u> 10. <u>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u> 11. 「<u>중소기업협동조합법</u>」의 <u>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u> 12. <u>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 및 감독</u> 13. <u>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u> 14. <u>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 15. <u>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u>	5. <u>중소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및 메시지 관리</u> 6. <u>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 대응</u> 7. <u>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2. <u>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u> 13. <u>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관리·감독</u> <삭제> <삭제>
--	---	---	---

16.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8.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19.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4.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4. (현행 제20호와 같음)

<삭 제>

7.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고용·노동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

10.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11.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승계 지원

1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고용 동향의 분석

14. 중소기업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노사 협력 및 노사 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복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 삭 제

18. 중소기업의 업종분야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중소기업 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6.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9의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정책정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20.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관련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1.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분야별 활용·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9.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⑨ 정책통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기업환경정책과장-----	10.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10.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1. 중소기업정책 현황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10의2. 삭제	11.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업계동향 파악 및 공동 대응 등 협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1.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12.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와의 정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2.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3.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수립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4.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 및 감독	13.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에 대한 품질 진단	14. 민간·현장 전문가로부터의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5.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5.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간 협력 등 대응에
		15.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16. 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전산화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운영 18. 그 밖에 중소기업 통계 관련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신 설> ⑩ 정책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조정 등 성과관리 총괄 2.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사업의 평가기준 마련 <신 설> <신 설> 3. 4. (생 략) <신 설>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17.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승계 지원 18.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19. 대내외 경제위기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⑩ 정책분석평가과장----- -----. 1. 중소기업 정책 및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4.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1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16.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 조정에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7. 중소기업 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신 설> 8. (생 략) 9. 각 부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조정 10.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신 설> <신 설> <신 설> ⑪ 재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6.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7.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8.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7. (현행 제8호와 같음) 9.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0.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11. 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전산화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운영 13. 중소기업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⑫ 기업구조개선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	---	---	--

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재창업에 필요한 교육, 자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11.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운영 12.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13.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5. ~ 2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 19. (현행 제15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 20.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21.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 ⑪ 국제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⑫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다음 사	2.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협력 3. 외국 정부·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시행 5.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6.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8.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9.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10. 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12.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	--	-------------------------	---

항을 분장한다.
1.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u>
2.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3.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u>
4.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u>
5.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대응 및 동향분석</u>
6. <u>그 밖에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⑬ <u>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략)
7. <u>판로지원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8. ~ 14. (생략)
15. <u>지식서비스</u> 중소기업 해외

⑫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4. (현행과 같음)
15. <u>서비스</u> 중소기업 해외진출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6. ~ 29. (생략)
30. ~ 34. (생략)
⑭ <u>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운영</u>
2. <u>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u>
3. ~ 17. (생략)
18. <u>중소기업 경영실태·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u>
19. ~ 22. (생략)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 29. (현행과 같음)
<삭제>
⑬ ----- -----.
1. <u>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u>
2. <u>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3. ~ 17. (현행과 같음)
<삭제>
18. ~ 21. (현행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⑭ <u>인력정책과장</u> ----- -----.
1. <u>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2. <u>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u>
3. <u>중소기업 고용 및 인력수급에 관한 동향분석, 인력지원계</u>

회의 수립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고용·노동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인력지원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노사 협력 및 노사 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개선 및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업종분야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중소기업 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15.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력수급 효율화 및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의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파견·채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 및 영마이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관련 학과 및 학부의 운

영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
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
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공
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26. 중소기업 인력 활용·공급
동향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
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2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
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지
원,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
력 지원에 관한 사항
29.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
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
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
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32.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해
임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중
소기업의 분야별 활용·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 ⑮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 <신 설>
6. ~ 18. (생 략)
 - 18의2.·19. (생 략)
20.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상표개
발 지원에 관한 사항
- 21.·22. (생 략)
23. 민속공예산업의 육성
24. ~ 33. (생 략)
- <16>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
- ⑮ -----
-----.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 공
공구매 실적관리 총괄
 6. ~ 18. (현행과 같음)
 - 19.·20. (현행 제18호의2 및 제
19호와 같음)
- <삭 제>
- 21.·22. (현행과 같음)
- <삭 제>
23. ~ 32. (현행 제24호부터 제
33호까지와 같음)
- ⑮ 기술혁신정책과장-----
-----.
1.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u>의 교류</u>	<u>의 수립·시행</u>	<u>사항</u>	<u>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u>
2.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협력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운용	13.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및 기술장벽 해소의 지원	1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 조사 및 통계조사
3. 외국 정부·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신 설>	14.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술 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시행	4. 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운영	<신 설>	15.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5.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5. 중소기업 관련 기술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6.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선진기술의 동향조사 및 소개	<신 설>	17.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7.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분석 및 육성
8.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8.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9.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신 설>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0. 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신 설>	21.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
11.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11. ----- 기술연구회의 지원-----	<신 설>	
12.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12. 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		

<신 설>	산의 조정 및 편성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신 설>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7>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 스터) 구축 및 연계	18.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19. 중장기 지역산업·기업발전 계획 및 지역별 산업·기업진 흥계획의 수립·평가 및 추진
2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 한 특례법」의 운용	20.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 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 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1.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 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2. 지역 연고·전통자원의 개 발 및 지역 연고·전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신 설>	23.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

<신 설>	항 24. 지역·기업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5.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운용
<신 설>	26.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 기업정책의 조사·분석·성과 평가 및 발굴·기획 등에 관 한 사항
<신 설>	27.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신 설>	28.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 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9.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 관련 법령 제도의 연구 개선
<신 설>	30.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 한 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31.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사업 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 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2.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3.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체계

	<u>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4.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간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5.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6. 지역산업 및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u>
<u><신 설></u>	<u>37.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8.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⑰ 디지털혁신과장-----</u> <u>-----.</u>
	<u>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u>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u>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의 수립·시행</u>
	<u>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u>

	<u>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u>
	<u>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7.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u> <u>에 관한 사항</u>
	<u>8.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9.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분석·유통·활용</u>
	<u>10. 중소기업 디지털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u>
	<u>11.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u>
	<u>12.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의 기반 조성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u>
	<u>13. 중소기업 통합 디지털 혁신(경영정보화 포함) 경영 체제</u>

<18> <u>지역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중장기 지역산업·기업발전 계획 및 지역별 산업·기업진흥계획의 수립·평가 및 추진</u> 2. <u>지역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u> 4. <u>해외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u> <신 설> 6. <u>지역 연고·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전통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추진</u> 7. <u>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u> 14. <u>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u> ⑱ <u>기술개발과장</u>----- -----. 1. <u>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u> 2. <u>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u> 3. <u>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u> 4. <u>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u> 5. <u>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u> 7. <u>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u>		8. <u>지역·기업별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u> 9. <u>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운용</u> 10. <u>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 기업정책의 조사·분석·성과 평가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u> 11. <u>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12. <u>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13. <u>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 관련 법령 제도의 연구 개선</u> 14. <u>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u> 15. <u>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u> 16. <u>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7. <u>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을 위</u>	8. <u>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원방안 수립</u> 9. <u>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u> 10. <u>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12. <u>산·학·연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13. <u>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u> 14. <u>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u> 15. <u>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지원</u> 16. <u>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u> 17. <u>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u>
--	--	--	--	---

<u>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u>	<u>한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정보 구축·제공 및 공동활용 지원 에 관한 사항</u>
<u>18.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 한 사항</u>	<u>18.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 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19.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 한 산·학·연 간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19.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 원</u>
<u>20.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 한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u>20. 지역협동형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u>
<u>21. 지역산업 및 기업의 경영여 건 개선 및 애로해결</u>	<u><삭 제></u>
<u>22.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3.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4.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9> 제조혁신지원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u>	<u>㉑ 제조혁신과장----- -----.</u>
<u>1. (생 략)</u>	<u>1. (현행과 같음)</u>
<u>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u>	<u>2.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에 관한</u>

<u>한 사항</u>	<u>사항</u>
<u>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4. (생 략)</u>	<u>3. (현행 제4호와 같음)</u>
<u><신 설></u>	<u>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 간 등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u>
<u>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 간</u>	<u><삭 제></u>
<u>6. ~ 7. (생 략)</u>	<u>5. ~ 6. (현행 제6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u>
<u><신 설></u>	<u>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 원 및 지역 확산에 관한 사항</u>
<u>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 한 사항</u>	<u>8.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및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9.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 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0.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 항</u>	<u><삭 제></u>
<u>1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u>	<u><삭 제></u>

<u>확산에 관한 사항</u>			<u>에 관한 사항</u>
<u>1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u>24.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 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1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직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u>25.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14. ~ 21. (생 략)</u>	<u>9. ~ 16. (현행 제14호부터 제2 1호까지와 같음)</u>	<u><신 설></u>	<u>26.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㉑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신 설></u>	<u>18.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 및 지원에 관 한 사항</u>		<u>1.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유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9.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 한 사항</u>		<u>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u>
<u><신 설></u>	<u>20.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사항</u>		<u>3.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u>
<u><신 설></u>	<u>2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 령검토 및 제도의 연구·개선 에 관한 사항</u>		<u>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 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사항</u>
<u><신 설></u>	<u>22. 중소기업 공정혁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u>		<u>5.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의 양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3.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u>		<u>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u>
			<u>7.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행정 조치 및 조치에 관한 사항</u>

<신 설>

8.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기술 보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 행정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보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㉓ 입지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입지, 공간 및 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3.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

- 스터) 구축 및 연계
5. 해외 중소기업 지역 집적지(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 및 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7. 중소기업 협업, 협동화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해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2.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지역 중소기업 관련 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3.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14.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u>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6. <u>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u> 17. <u>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8. <u>그 외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생략)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 ----- ----- ----- <u>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u> ----- ----- ----- ----- -----				
③ <u>창업진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u>	③ <u>창업정책관</u> ----- ----- ----- <u>제17호</u> ----- -----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④ <u>벤처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④ <u>벤처정책관</u> ----- ----- ----- -----.
		⑤ <u>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8호 및 제29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삭 제>
		⑥ <u>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총괄과, 기술창업과, 청년정책과, 창업촉진과, 창업생태계조성과, 벤처혁신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회수관리과,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인력육성과 및 디지털혁신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⑥ <u>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및 미래산업전략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⑦ <u>창업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창업정책과장</u>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2.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u>
<u><신 설></u>	<u>23. 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4. 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u><신 설></u>	<u>25. 재창업에 필요한 교육, 자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u>
<u><신 설></u>	<u>26.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운영</u>
<u><신 설></u>	<u>27.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8.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9.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u>
<u>22. (생 략)</u>	<u>30. (현행 제22호와 같음)</u>
⑧ 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u><삭 제></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u>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u>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2.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3.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u>
<u><신 설></u>	<u>14.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5.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u>
<u><신 설></u>	<u>16.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촉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u>
<u>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u>	<u>18. (현행 제11호와 같음)</u>

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창업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9.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0. 창업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2.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4.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5.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6.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창업생태계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8. 창업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9.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제품 제작 등 제조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5.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총괄 16. 창업 생태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⑪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제품 제작 등 제조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인	17.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와 설립·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 퇴직자 및 중장년층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	---	--	--

<u>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총괄</u> 7. <u>창업 생태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u> 8. <u>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u> 9. <u>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u> 10. <u>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와 설립·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11. <u>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u> 12. <u>퇴직자 및 중장년층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u> ⑫ <u>벤처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5. (생 략) 16. <u>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u> 17. <u>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8. <u>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u>	⑪ <u>벤처정책과장</u>-----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정책 수립 및 이행</u> 17. <u>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보증에 관한 사항</u> <삭 제>		<u>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9. ~ 20. (생 략) <신 설> <신 설> ⑬ (생 략) 1. ~ 4. (생 략) 5. <u>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영</u> 6. <u>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모태조합 출자 지원에 관한 사항</u> 7. <u>투자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8. (생 략) 9. ~ 10. (생 략) 11. <u>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진출 및 협력</u> 12. (생 략) 13. <u>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관리 등에</u>	18. ~ 19. (현행 제19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20. <u>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바우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1. <u>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u>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예산 운용 및 관리·운영</u> 6. <u>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모태조합 출자 지원에 관한 사항</u> 7. <u>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삭 제> 9. ~ 10. (현행과 같음) 11. <u>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진출 및 협력</u> 12. (현행과 같음) 13. <u>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u>
---	---	--	---	---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⑭ 투자회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벤처투자조합의 <u>등록·신고·관리 및 감독</u> 4. ~ 13. (생 략) 14. <u>외국투자기관협의회</u>의 <u>운영 지원 및 국내외 벤처투자기관</u>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5. (생 략) <신 설>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u>지역의 균형적 벤처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u> 15. <u>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글로벌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u> 15의2. <u>국내외 벤처투자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u>운용</u> 17. <u>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u> ⑬ <u>투자관리감독과장</u>----- -----. 1. · 2. (현행과 같음) 3. ----- <u>등록·관리</u>----- 4. ~ 13. (현행과 같음) 14. <u>국내외</u> ----- ----- 15. (현행과 같음) ⑭ <u>미래산업전략팀장</u>----- -----. 1.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u>	⑮ <u>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시행</u>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u>운용</u> 3. <u>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u>	<u>처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u> 2.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3.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u> 4.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u> 5. <u>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대응 및 동향분석</u> 6. <u>그 밖에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	--	--	--

4. 중소기업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운영
5. 중소기업 관련 기술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선진기술의 동향조사 및 소개
7.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8.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9.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 조사 및 통계조사
14.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술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15.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16.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17.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분석 및 육성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21.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⑩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
의 수립·시행
2.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3. 삭제
4.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11.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
관공동투자 기술개발자금 조
성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
원방안 수립
15.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타당
성 조사에 관한 사항
16.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기술

-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7.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
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산·학·연 협력에 관한 정
책의 수립·시행
- 18의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1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
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9의2.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
정
20.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21.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
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22.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
한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정보
구축·제공 및 공동활용 지원
에 관한 사항
23. 삭제
24.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
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
원

26. 지역협동형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27. 삭제

⑰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유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
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행정
조치에 관한 사항

8.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
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기술 보호 교육·홍
보에 관한 사항

<삭 제>

10.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에 관한 사항

11.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삭제

⑱ 인력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력
수급 효율화 및 인력의 양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초·중급 연구인
력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파견·채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술사관육성사업에 관한 사
항

7.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삭 제>

8. 영마이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관련 학과 및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13. 중소기업 인력 활용·공급 동향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1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23. 중소기업과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4. 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19> 디지털혁신지원과장은
-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중

<삭 제>

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
원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
한 사항

3.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의
수립·시행

4.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선
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5. 중소기업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
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
령검토 및 제도의 연구·개선
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제조혁신 문화 확
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제조혁신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에 관
한 사항

9.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규
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 거래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가공
·분석·유통·활용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
한 사항

14.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
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
에 대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
한 사항

17.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
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18.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 조
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통합 정보화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
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23.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4.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
관 제조혁신 디지털 전환 관
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
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생략)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
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
지, 제10호부터 제21호까지, 제2
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
다.

④ (생략)

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지역상
권과, 전통시장육성과, 상생협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6호까
지, 제6의3호부터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디지털소상공인과, 소상공
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정책과,

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거래환경개선과를 두되, 각 과
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
한다.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3. (생략)

4. (생략)

<신설>

5.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

6. 7. (생략)

8.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9. ~ 11. (생략)

13. (생략)

사업영역조정과, 불공정거래개
선과 및 소상공인 제도약과---

---.

⑥ -----
-----.

1.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 지원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

4.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4호와 같음)

7.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

<삭제>

8. 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삭제>

11.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
1호까지와 같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u>소상공인 관련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u>	5. ----- <u>구축</u>	<u>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15. <u>삭 제</u>	15. (현행과 같음)	4. <u>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u>
16. <u>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u>	16. ----- <u>운영</u>	<u><신 설></u>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6. <u>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u>
19. <u>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u>	19. ----- <u>시정</u>	7. <u>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u>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8. <u>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u>
25. <u>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u>	25. ----- <u>활동지원</u>	9. <u>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u>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10. <u>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u>
<u><신 설></u>	27. <u>지역별 소상공인 육성기관 구성·운영 지원</u>	11. <u>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26의2. 「 <u>소상공인기본법</u> 」 제10조에 따른 <u>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u>	3. <u>소상공인정책심의회</u> ----- --	12. <u>소상공인 컨설팅 지원</u>
26의3. (생 략)	10. (현행 제26호의3과 같음)	13. <u>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u>
27. (생 략)	28. (현행 제27호와 같음)	14. <u>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u>
⑦ <u>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15. <u>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u>
1. <u>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u>		16. <u>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u>
2. 「 <u>유통산업발전법</u> 」 제2조제6호에 따른 <u>체인사업의 육성</u>		
3. <u>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 재</u>		

17. <u>업종별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u>		<u>사항</u>	
18. <u>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u>		19. <u>삭 제</u>	19. (현행과 같음)
19. <u>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20. <u>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비용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20. <u>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u>		21. ~ 29. (생략)	11. ~ 19. (현행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와 같음)
⑧ <u>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디지털소상공인과장</u> -----	<신 설>	⑧ <u>소상공인성장축진과장</u> -----
1. <u>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삭 제>		1. <u>소상공인 창업, 성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u>
2. <u>혁신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운영</u>	<삭 제>		2. <u>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u>
3. <u>혁신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공유 지원</u>	<삭 제>		3. <u>기업가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운영</u>
4. <u>혁신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u>	<삭 제>		4. <u>기업가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공유 지원</u>
5. <u>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및 홍보</u>	<삭 제>		5. <u>기업가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u>
6. ~ 7. <u>삭제</u>	<삭 제>		6. <u>기업가형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및 홍보</u>
8. ~ 17. (생략)	1. ~ 10. (현행 제8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7. <u>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u>
18. <u>소상공인 세제 지원에 관한</u>	<삭 제>		8. <u>업종별 소상공인 육성 지원</u>
			9. <u>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u>

10.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
증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1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3.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
영
14.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출
원, 보호, 활용 지원
16.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
체계 혁신 지원
17.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
성
19.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
20.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성
장, 협업 활성화
2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
한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 창
출
22. 소상공인 대상 투자제도, 투
융자 연계 제도 기획 및 운영

⑨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⑩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4. (생 략)

⑪ (생 략)

⑫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4. (생 략)

⑬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신 설>

23. 소상공인 창업혁신거점 구
축·운영

⑨ -----
-----.

1. ~ 31. (현행과 같음)

32. 상권기획자 제도 기획 및 운
영

33. 상권기획자 지정, 육성, 협
력 증진

34. 상권발전기금 제도 기획 및
운영

35. 상권발전기금 조성, 운용 지
원

⑩ 전통시장과장-----
-----.

1. ~ 24.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사업영역조정과장-----
-----.

1. ~ 24. (현행과 같음)

⑬ 불공정거래개선과장-----
-----.

1. ~ 14. (현행과 같음)

⑭ 소상공인제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u>및 운영</u> 2. <u>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u> 3. <u>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u> 4. <u>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u> 5. <u>폐업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u> 6. <u>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u> 7. <u>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 재기 지원사업</u> 8. <u>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u> 9. <u>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u> 10. <u>소상공인 각종 비용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그 밖에 소상공인 제도약에 관한 사항</u>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생략)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현행과 같음)
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u>조정협력과</u> , 성장지원과, 창	② ----- -- <u>지역정책과</u> -----

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u>조정협력과</u> 및 <u>지역혁신과</u>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경기도지방중소벤처기업청 <u>조정협력과</u>장: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 제1호를 제외한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u>조정협력과</u>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경기도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3. (생략) 4.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u>조정협력과</u>장: 행정사무관·	----- ----- -- <u>지역정책과</u> ----- ----- ----- 1. ----- <u>지역정책과</u>장----- ----- ----- 2. ----- <u>지역정책과</u>장----- ----- ----- -----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 <u>지역정책과</u>장 -----
---	---

지역기업정책관, <u>창업진흥정책관</u> , <u>벤처혁신정책관</u> 및 <u>기술혁신정책관</u>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 <u>창업정책관</u> , <u>벤처정책관</u> 및 <u>기술정책관</u> -----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u>고객정보화담당관</u> , <u>지역특구과장</u> , <u>거래환경개선과장</u> , <u>판로정책과장</u> , <u>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u> , <u>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u> 및 <u>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u> 의 성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u>정보화담당관</u> , <u>특구운영과장</u> , <u>불공정거래개선과장</u> ,-----
제19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 ① <u>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 ① <u>특구혁신기획단장</u> -----
② <u>규제자유특구기획단</u> 에 <u>특구총괄과</u> 및 <u>지역특구과</u> 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u>특구혁신기획단</u> 에 <u>특구정책과</u> , <u>특구운영과</u> 및 <u>특구지원과</u> -----

③ <u>특구총괄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③ <u>특구정책과장</u> ----- -----.
1.·2. (생략)	1. <u>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u>
3. <u>규제자유특구위원회</u> 및 <u>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u> 의 구성·운영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4. <u>규제자유특구계획</u> 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삭 제>
5. <u>규제자유특구계획</u> 의 승인·변경 및 <u>규제자유특구</u> 의 지정·지정해제	<삭 제>
6. <u>규제자유특구</u> 관련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협력	5. <u>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u>
7. (생략) <신 설>	<삭 제>
8. <u>규제자유특구</u>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총괄 운영	7. (현행과 같음)
9. <u>규제자유특구</u>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8. <u>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u>
	17. <u>특구</u> -----
	--
	9. <u>글로벌 혁신특구</u> 에 관한 법령의 운용
	10. <u>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u>

10. (생 략)	6. (현행 제10호와 같음)	원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 항	항
1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 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 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11.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 는 지원기관의 관리·감독	19. (생 략)	4. (현행 제19호와 같음)
<신 설>		20. 규제자유특구의 관리·감독 및 운영의 평가	<삭 제>
12.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관 련 부처 등 협의체 운영	12.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 망의 구축·운영	21.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입 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	<삭 제>
13. 규제자유특구 관련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 획의 수립 지원	19. 특구 ----- --	22.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중 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 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 의견 조정	<삭 제>
14. 규제자유특구계획 관련 광 역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13.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 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3.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 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삭 제>
15. 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24. 규제자유특구 관련 연계지 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삭 제>
16.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25. (생 략)	20. (현행 제25호와 같음)
17. 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 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1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 는 지원기관의 관리·감독	④ 지역특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특구운영과장----- -----.
18.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 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	<삭 제>	1.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시책의 추진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 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
	18. 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	2.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 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지정·신 청에 관한 사항
		3. 취약·낙후 지역 소재 중소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기업에 대한 지원	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지정해제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 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 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마련	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 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 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신 설>	10.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 한 사항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 령의 운용	5.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신 설>	1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 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 원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 항
6.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신 설>	6. 규제자유특구 계획 관련 지 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신 설>	12.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7. (생 략) <신 설>	7. 규제자유특구계획별 분과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 인·변경 및 글로벌 혁신특구 의 지정·지정해제
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 과평가 업무	21.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14.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지방 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수립 지원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22.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 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신 설>	15.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8.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 한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특	<신 설>	17.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검토

<u><신 설></u>	<u>18. 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u>		<u>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9.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구성·운영</u>		<u>7. 글로벌혁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지정해제</u>		<u>8. 글로벌 혁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u>
<u>10.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23. ----- 특구 관련 -----</u>		<u>9.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u>
<u><신 설></u>	<u>⑤ 특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0. 글로벌혁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u>
	<u>1. 규제자유특구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		<u>1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
	<u>2.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 등 특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u>		<u>1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u>
	<u>3.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후관리</u>		<u>13. 특구 관련 자료의 조사, 성과관리 및 통계 구축</u>
	<u>4.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규제의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u>		<u>14. 특구 간 협의체 운영</u>
	<u>5.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u>		<u>15. 특구 관련 연계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6. 글로벌혁신특구의 관리·감독</u>		<u>16. 그 밖에 특구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483	488	+5
·	·	·	
·	·	·	
일반직 계	476	481	+5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68	172	+4
·	·	·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40	143	+3

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 특구혁신기획단----- ----- -----.
제20조(한시정원) ① 삭 제	제20조(한시정원)
②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⑥ ----- ----- ----- ----- 2024년 12월 31일-----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통계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u>29</u>	<u>27</u>	-2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476</u>	<u>481</u>	+5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79</u>	<u>183</u>	+4
·	·	·	
행정주사 · 세무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32</u>	<u>135</u>	+3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 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u>26</u>	<u>24</u>	-2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08</u>	<u>404</u>	-4
일반직 계	<u>408</u>	<u>404</u>	-4
·	·	·	
·	·	·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통계 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5</u>	<u>23</u>	-2
·	·	·	
·	·	·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8	404	-4
일반직 계	408	404	-4
·	·	·	
·	·	·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통계 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5	23	-2
·	·	·	
·	·	·	
기계운영서기보	1	<삭 제>	-1
사무운영서기보	5	4	-1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6	475	-1
·	·	·	
·	·	·	
일반직 계	128	127	-1
·	·	·	
·	·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9	28	-1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76</u>		<u>475</u>	-1	
	.		.		.		
	.		.		.		
일반직 계			<u>128</u>		<u>127</u>	-1	
	.		.		.		
	.		.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u>29</u>		<u>28</u>	-1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중소벤처기업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제19조의
2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		.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u>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u>		<u>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u>		
총계			<u>19</u>		<u>21</u>	+2	
일반직 계			<u>19</u>		<u>21</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2</u>		<u>13</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u>	<u>2</u>	+1
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2. 소상공 인코로나1 9회복지원 단장(존속 기한: 202 2년 12월 31일)	2. 소상공 인코로나 19회복지 원단장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 1일)	
3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3. 소상공 인손실보 상과(존속 기한: 202 2년 12월 31일)	3. 소상공 인손실보 상과(존 속기한: 2 024년 12 월 31일)	
총계	<u>7</u>	<u>8</u>	+1
일반직 계	<u>7</u>	<u>8</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3</u>	<u>4</u>	+1
·	·	·	
·	·	·	

[별표 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2. 제2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3. 제20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4. 제20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5. 제20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22
일반직 계	2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 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